



<그림 6> 경사진 지붕 안전시설 설치(예)

- (나) 작업자가 사용하는 그네식 안전대는 안전인증여부 및 안전대 각부의 손상 등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안전대 걸이줄 길이가 긴 경우와 작업상황에 따라 미끄러지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자는 추락방지대(로프) 등과 같은 멈춤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안전대 걸이용 와이어로프, 마닐라로프, 밴드 등을 느슨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시켜야 한다.
- (마) 안전대 걸이용 로프 등은 날카로운 모서리면에 접하여 당기지 않도록 하고 매듭이 없어야 하며 작업 중 응급조치로 연장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(바) 추락방지대(로프)나 안전블럭 장치 등의 사용은 작업 전에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로프 등의 끝이 고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.

(3) 경사진 지붕에서의 지붕보호벽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- (가) 지붕경사가  $45^\circ$  이상인 경우에는 <그림 7>과 같이 지붕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와 지붕보호벽 밑부분 또는 지붕하부 작업발판 간의 수직 거리는 5 m 이하이어야 한다.